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19
----------	------

2025년 4월 2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28일, 이효원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3. 상정일자 :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효원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 및 학교장의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및 유지·관리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의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
- 학교장의 학교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 6~7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3월 28일 이효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519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과 함께 6대 영양소 중의 하나로, 체온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누구나 매일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질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밀접하게 연관된 학교 먹는물은 공급원(상수도, 지하수 등)과 공급장치(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등이 지역별·학교별로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¹⁾
- 서울시 소재 학교의 경우 ‘아리수’로 명명된 서울시 수돗물이 공급되며, 음수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아리수 본부’로부터 직결급수가 되는 음수대 설치 및 수질검사 등과 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²⁾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현황’에 따르면, 학교에는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또는 먹는 샘물 등 다른 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공급장치에 따라 위생관리 및 수질검사에 대한 기준과 근거도 상이한바,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현황 (2024년 4분기 기준)

학교급	학교수	상수도			지하수		먹는물 공급장치		
		직결급수	직결급수+저수조 경우	저수조 경우	먹는물	생활용수	정수기	먹는샘물	아리수 음수대
초	605	581	17	7	0	18	1,225	329	8,818
중	387	364	11	12	0	7	1,622	85	6,971
고	318	272	24	22	0	16	3,604	327	4,629
특수	33	24	5	4	0	6	158	0	238
각종	16	14	0	2	0	0	92	27	126
합계	1,359	1,255	57	47	0	47	6,701	768	20,782

1) ① 왜 하필 ‘학교’정수기만 대장균 득실? 이유 따져봤더니 (2024.3.13. KBS 뉴스)

- 일부 학생들이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거나 손으로 접촉하여 정수기 오염

② 경기도 어린이집·학교 등 음용 지하수 11.3% ‘부적합’ (2021.1.21. 아시아경제)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설치), 제8조(수질검사)

- 더욱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먹는물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매년 발행하는 ‘학교보건기본방향’을 통해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할 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나 제도적인 기반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 참고로 다수의 타시도교육청은 이미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2] 타시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2020.11.12.
2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2023.10.5.
3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2024.3.28.
4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2021.4.15.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2021.9.23.
6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2021.9.16.
7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2020.12.31.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2023.4.28.
9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2021.7.20.
10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2021.8.6.

-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8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의 책무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학교 먹는물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먹는물 관리계획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지침³⁾ 등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바, 형식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법령에서 조·항·호·목을 표기할 때는 ‘제○조제○항제○호○목’ 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행정기관명을 약칭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정식명칭을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⁴⁾

○ 따라서, 안 제2조제1호의 ‘제2조2호’ 를 ‘제2조제2호’ 로, 안 제3조제1항의 ‘서울시교육감’ 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으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책무(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교육감에게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안 제1항), 학교장에게는 먹는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를

3)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9.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_증보판)’, 법제처, 2024.1.

4) ‘2024 법령 입안 심사 기준’(법제처) 제3편제1장 3. 법령 조항과 별표·서식(728페이지) 및 제3장 2. 약칭의 사용(793페이지)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2항).

-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1항⁵⁾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제1항제4호의 기준⁶⁾에 따라 학교 내 먹는물의 위생 상태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⁷⁾

- 이에 따라, 안 제3조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에게는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에 대한 책무를, 학교장에게는 학교 현장의 먹는물 유지·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먹는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는 교육감에게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먹는물 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垓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7)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는물관리법」 제2조(책무) 8)에 따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감은 학교의 먹는물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먹는물 관리 업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표-3] 학교 먹는물 관련 지원 사업’ 과 같이 급수시설 교체 및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3] 학교 먹는물 관련 지원 사업(2022~2025)

(단위: 천원)

연도별	학교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2022	경기고	노후상수도관 교체	100,000	82,751
	진선여중	본관노후수도 배관공사	55,000	48,730
	인공지능고	급수시설개선	76,000	76,000
	신남초	급수시설 교체	50,000	50,000
	영림초	노후급수관 교체	27,000	10,614
	고척고	급수관 교체	76,670	51,903
	장평초	급식실 배관 및 보일러 교체	18,150	18,150
	면목고	노후 상하수도 배관 누수 방수	10,000	10,000
	상원초	노후 급수시설 환경개선	9,500	9,500
	동명초	급식실 보일러실 배관 및 온수탱크 교체	12,333	12,333
선린중	정보센터동, 남관동 급수관 재설치	19,919	19,919	
2023	명일초	별관수도배관 교체	35,000	31,976
	개웅초	가압펌프 설치 및 급수배관 분리	29,000	29,000
	대영중	체육관 급수배관 동파 방지	8,000	8,000
	고척고	급수관 누수 긴급보수 및 기타	20,000	20,000
	신성초	급수배관 교체	80,000	63,249
	불암중	옥외 급수배관 개선	56,800	56,800
	불광중	운동장 음수대 개보수 공사	40,000	40,000
	성서초	본관동 노후 급수관 교체 및 놀이터 보호대 설치 공사	27,000	27,000

8) 「먹는물관리법」 제2조(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연도별	학교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녹번초	상수도배관 철거 및 교체	24,000	24,000
	재동초	급수관 교체	22,484	22,484
2024	목동중	노후배관등 교체공사	280,000	266,937
	신북초	상수도 배관교체	95,254	88,837

- 따라서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교육감이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4) 관리계획(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는 학교장에게 안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먹는 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학교장의 관리계획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호 및 이에 따른 [별표5]9)에서는 학교장이 관리해야 할 먹는물

9) [별표5] 식기·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

2. 먹는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 (1)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관리

- (1)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질검사

- (1)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나무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에 대한 관리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장은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먹는물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안 제6조는 학교장이 수립하는 먹는물 관리계획을 통해 이러한 의무를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안 제3조(책무)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먹는물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 제7조(관리)에서도 먹는물 관리를 학교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형식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학교현장의 업무부담과 갈등 유발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 4. 9.).

- 그러나 학교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먹는물 관리 현황이 상이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상위법에 따라 학교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관리계획 수립은 먹는 물에 대한 계획성 있는 관리로 학교장의 관리 의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한 물의 공급 및 동시에 학부모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안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계획의 구성 내용은 대부분 관련 법령¹⁰⁾에 따른 교육청, 서울아리수본부 지침 및 기준에 의해 이행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범위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한다)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10)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고려할 수 있는바,

안 제6조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학교장은 먹는물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관리(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는 학교장이 수행해야 하는 먹는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안 제1항)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먹는물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안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표-4] 학교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청소, 소독 등의 내용 및 기준’ 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정기적인 청소·소독·수질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적합 먹는물에 대한 조치도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및 ‘아리수 음수대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¹¹⁾

예를 들어, 정수기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을 중지하고, 개선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재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검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직전 4회 검사 중 2회 이상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수기를 철거 또는 교체하고, 상수도시설 인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 학교보건 기본방향 -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서울시교육청 발행)
아리수 음수대 관리 매뉴얼(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 발행)

[표-4] 학교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청소, 소독 등의 내용 및 기준

구 분	관리사항	세 부 내 용
아리수 음수대	위생점검	◦ 주 1회 이상 : 내·외부 청소상태 등 위생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정수기	위생점검	◦ 주 1회 이상 : 내·외부 청소상태 등 위생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 정기적인 필터교체
	수질검사	◦ 분기별 1회 이상 : 탁도, 총대장균군 ⇒ 반드시 1,2학기 개학 전 실시 ◦ 관련규정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먹는 샘물	위생점검	◦ 주 1회 이상 : 내·외부 청소상태 등 위생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 유통기한 준수
	수질검사	◦ 분기별 1회 이상 : 탁도, 총대장균군 ⇒ 반드시 1,2학기 개학 전 실시 ※ 먹는샘물은 수질검사 제외 단, 정수기와 유사한 먹는 샘물(필터설치형)은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저수조	청소	◦ 관련규정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 ◦ 연 2회 : 개학 직전·후 청소 실시 ⇒ 상반기(2~3월), 하반기(8~9월) ◦ 청소 후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 실시
	수질검사	◦ 관련규정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 ◦ 연 1회 이상 : 6개 항목(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군 또는 대장균)
	위생점검	◦ 관련규정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 ◦ 매월 1회 이상 : 검검표 기록 관리
	기타 위생관리	◦ 저수조 수위조절 및 직결급수 전환 - 수도물 사용량과 위생을 감안하여 저수조 적정 체류시간(12~24시간) 이내 사용토록 수위 조절 - 식당, 세면대 등 생활음용수를 사용하는 장소는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직결급수로 전환 검토
	※ 제외대상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수도사업소로부터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대상 제외여부 확인	
지하수	수질검사	◦ 관련규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 음용수 : 분기별 1회(6개 항목), 연1회 이상(전 항목) ◦ 생활용수 : 3년마다 1회(20개 항목)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해당(단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제외)

○ 따라서 안 제7조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 실태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기반한 먹는물 관리 및 조치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장의 먹는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제2조2호” 를 “제2조제2호” 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서울시교육감” 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 “수립하여야 한다” 를 “수립할 수 있다” 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19
----------	------------

제안연월일 : 2025년 4월 2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법령 표기 원칙에 맞게 수정하고, 행정기관의 명칭을 정식명칭으로 수정함.
-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은 학교 먹는물 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먹는물 관리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른 지침 및 기준에 의해 이행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 규정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제2조2호” 를 “제2조제2호” 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서울시교육감” 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 “수립하여야 한다” 를 “수립할 수 있다” 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유아교육법」 제2조2호” 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시교육감” 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 를 “수립할 수 있다” 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3조(책무) ① <u>서울시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관리계획) ① 학교장은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무) ① <u>서울특별시교육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관리계획) ① ----- ----- 수 <u>립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5.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을 먹는물 기준에 맞게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수도관 등 수돗물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지원
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지원
4.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 지원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관련 시설개선 비용
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비용
3. 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수질검사 비용
4. 그 밖의 위생적인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비용

제6조(관리계획) ① 학교장은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
2. 학교 수돗물 관리
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관리
4. 학교 저수조 관리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냉·온수기, 정수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3. 그 밖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
2. 음용금지 및 근처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개선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